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

205

2022. 9. 28.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】

-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9.20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)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 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함(2015. 12. 15.).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 업 명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- 나. 위 치: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·성북미디어문화마루
- 다. 규 모: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m², 전용 1,791.1m²)
- 라. 사업주체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)
- 마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
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사. 출연금액(안): 295,940천원
 -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(1,479,700천원)의 20%분담 (인건비 767,500천원, 경상비 712,200천원) ※ 사업비 제외

아. 출연의 필요성

○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서울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- 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- 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○「방송법」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

○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 재단과 함께 4자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・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하였으며, 동 협약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운영비의 20%를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.

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.

- 1. (생략)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 1일 서울성북 미디어문화 마루 1~3층(전용 1,917㎡)를 사용하고 있으며, 기존 성북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할 때와는 달리 전용 면적의 증가, 시설 증대 및 인력 확대에 따라 운영료가 크게 증가하였음.

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〉

(단위 : 천원)

| 연 도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(안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총 운영비 | 438,690 | 843,500 | 1,452,300 | 1,428,300 | 1,479,700 |
| 서울시 출연금 (증감액) | 87,738 (1,051) | 159,388 (71,650) | 286,689 (127,301) | 285,660 (△1,029) | 295,940 (10,280) |
| 비고 | | 센터 이전 ('20.11.) | 성북미디어 문화미루 개관 (2021.5.27.) | | |

다. 동의안의 타당성

- 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약 14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는 이 중 20%인 2억 9천6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, 협약에 근거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 재단 서울센터는 2020년 4월부터 동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'서울 미디어랩'의 민간위탁(2022년 5억 9백만원)을 동시 수행하고 있는데,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미디어 스타트업기업 지원, 미디어 인프라지원・교육강좌 등이 주 업무임.
- 최근 서울시는 미디어 랩의 기능이 일부 타 시설(서울창업허브 창동)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3월로 중단이 논의되고 있음.

- 그러나 미디어 랩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당시 서울시청자미디어 센터와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각각의 사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운영에 동의하였음.
- 하지만 시설을 갖추어 놓은지 3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-서울 미디어 랩 연계사업목록 〉

| 연 번 | 사 업 명 | 사업내용(참가업체)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
| 1 | 시제품 공동기획 | 청각장애인 민원처리를 위한 수어통역 단말기 '손말, 데스크' 개발 (㈜함께걷는미디어랩) | | | |
| 2 |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| TBS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(㈜실버넷티비) | | | |
| 3 | 미디어 교육강좌 개설 |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강좌(디지털미디어코딩, 웹드라마제작, 아나운서스피치) 개설 (소셜감성, 크랭크인, 찬스웨이브) | | | |
| 4 k | K-테스트베드 구축·운영 (3,4분기 예정) | - 서울센터 시설, 장비를 활용한 입주기업 시제품 테스트베드 설치 및 테스트 지원 ※ 설치장소 :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미디어체험관(1층) | | | |
| | | 시제품명 내 용 비 고 | | | |
| | | 손말.데스크 수어통역 단말기((주)함께걷는 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미디어랩) | | | |
| | | MR(혼합현실, Mixed Reality)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액션박스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(믹스비전(주))활용 | | | |
| | | | | | |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**심사결과** : **원안가결**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19명, 참석위원 19명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의 안 205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.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, 을 체결함('15, 12, 15,)
- 나,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우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
나, 위 치: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·성북미디어문화마루

다. 규 모: 지상 1~3층(연면적 2.925.23m², 전용 1.791.1m²)

라. 사업주체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)

마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
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.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
- 사. 출연금액(안): 295.940천원
 -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(1,479,700천원)의 20%분담 (인건비 767,500천원, 경상비 712,200천원) ※ 사업비 제외

아. 출연의 필요성

○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서울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- 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- 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-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○「방송법」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출연할 수 있다.</u>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: 2023 회계연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 장정숙 (☎ 2133-6440)